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련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3. 13.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이수련 의원 등 열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어려움을 겪는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3조)
- 나.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다.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 라.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마.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바.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사. 포상 및 비밀 준수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청년정책과
- 라. 입법예고 : 2024. 3. 7. ~ 3. 12.(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2023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소위 “은둔형 외톨이” 로 불리면서,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수는 52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25세부터 은둔하는 경우 이들을 위해 1인당 15억 원의 사회적 비용(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청년 삶 실태조사’)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각종 경제적·심리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시의 지원정책 수립, 복지 및 고용 전문기관 등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자립 지원사업 마련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상자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례로 여겨지며, 향후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항

※ 사회적 고립청년 규모

- 약 51만 6,000명(*2023년 보건복지부 추정치)
- 만 25세에 은둔을 시작한 사람 1인당 사회적 비용 추정치: 약 15억 원
(출처: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청년 삶 실태조사’)

※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현황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총 29개
 - 광역 6개
(서울, 충남, 광주, 세종, 대구, 제주)
 - 기초 23개 (안양시, 이천시 등)
 - 이외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 제정: 6개 광역자치단체
(광주, 대전, 부산, 인천, 전남, 전북)

<표> 주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2024. 02. 14. 현재)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
1	서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2. 29.
2	충남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2. 29.
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1. 15.
4	대구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11.
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20.
6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
7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2023. 10. 10.
8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2023. 12. 22.
9	충북 청주시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5. 13.
10	경남 창원시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8. 16.

☑ 「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소득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1억 미만이며, 한시적 비용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최근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안양시 용역비 4천만원)
- 제8조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대상자 파악 및 사업에 참여 여부의 동의가 필요한 바,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2호
 - 연평균 1억미만이며 한시적 경비로 총3억원 미만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청년정책과장 박미경